

#붙임. 1

**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6. 2.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추진개요	2
1.2	계획의 내용	3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6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7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9
2.3	대안별 비교·검토	11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렴수렴 계획	14
3.1	의견수렴 계획	15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7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18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8
4.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19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추진개요

1.2 계획의 내용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추진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며, 세종시와 안성시를 연결하는 세종~안성구간의 신설노선으로 수도권 남·북측 고속도로인 경부·중부고속도로 주변의 지속적인 도시팽창과 신도시 건설, 유동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내용을 공개함.

다. 추진경위

- 2004. 11 :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구상(국토해양부)
- 2005. 12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국토해양부)
- 2008. 06 :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수립(국토해양부)
- 2008. 07 ~ 2009. 06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2008. 08 ~ 2009. 11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기본조사(한국도로공사)
- 2009. 07. 02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 2009. 08. 10 ~ 09. 05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27일간)
- 2009. 08. 12 ~ 08. 31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06 :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2011~2020)
세종~서울 남북2축(경부고속도로) 지선으로 지정
- 2015. 11 :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사업추진 발표(국토교통부)
- 2016. 01 ~ 02 : 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1.2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투자사업

나.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다.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라. 규모 : 전체연장 65.9km(충북오송 연결도로 포함)

- 지자체별 연장

구분	세종특별시	충북 청주시 (오송신도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연장(km)	27.4	3.0	26.1	9.4

마. 설계속도 : 120km/hr

바.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예정 공사기간)

사. 주요 계획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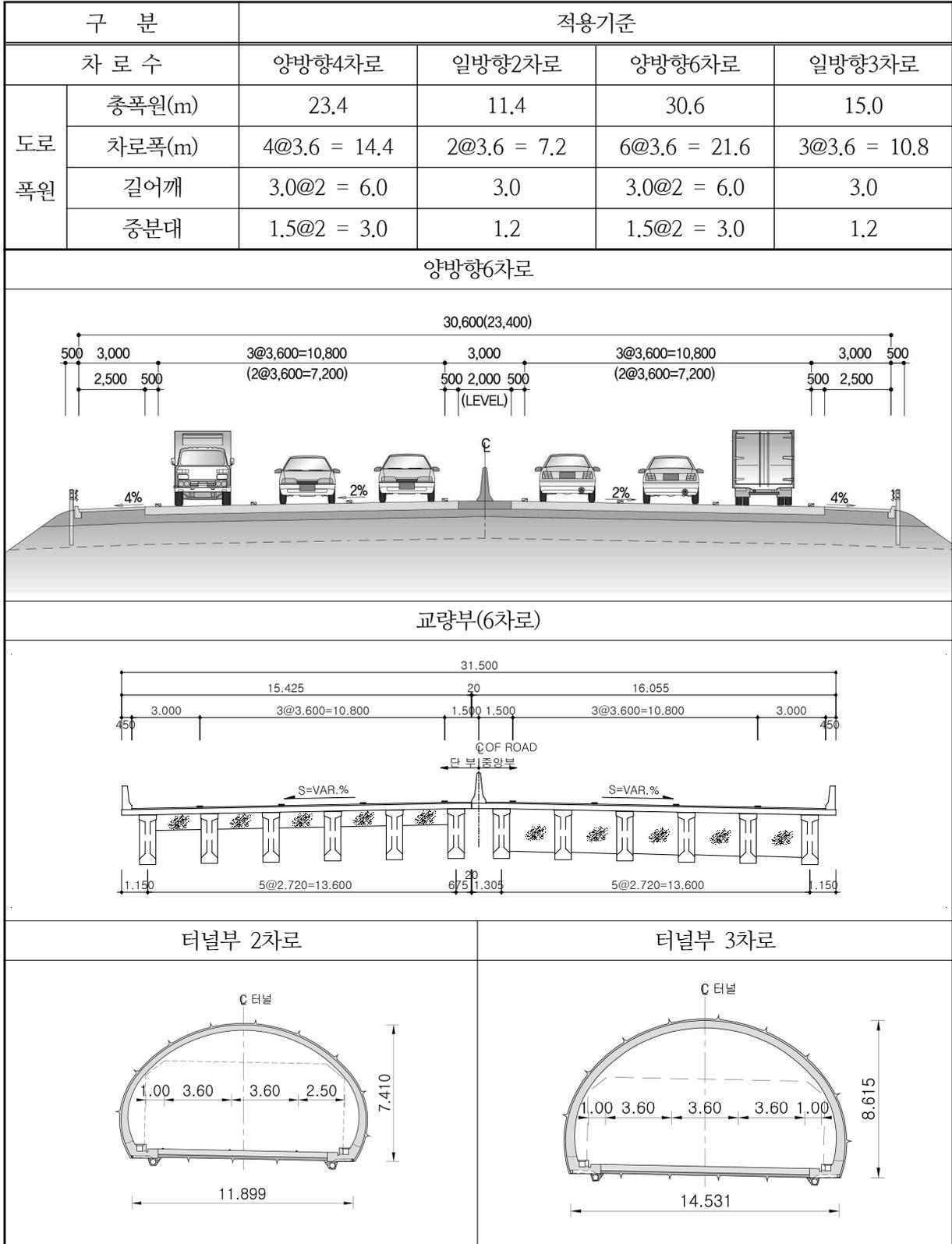
[주요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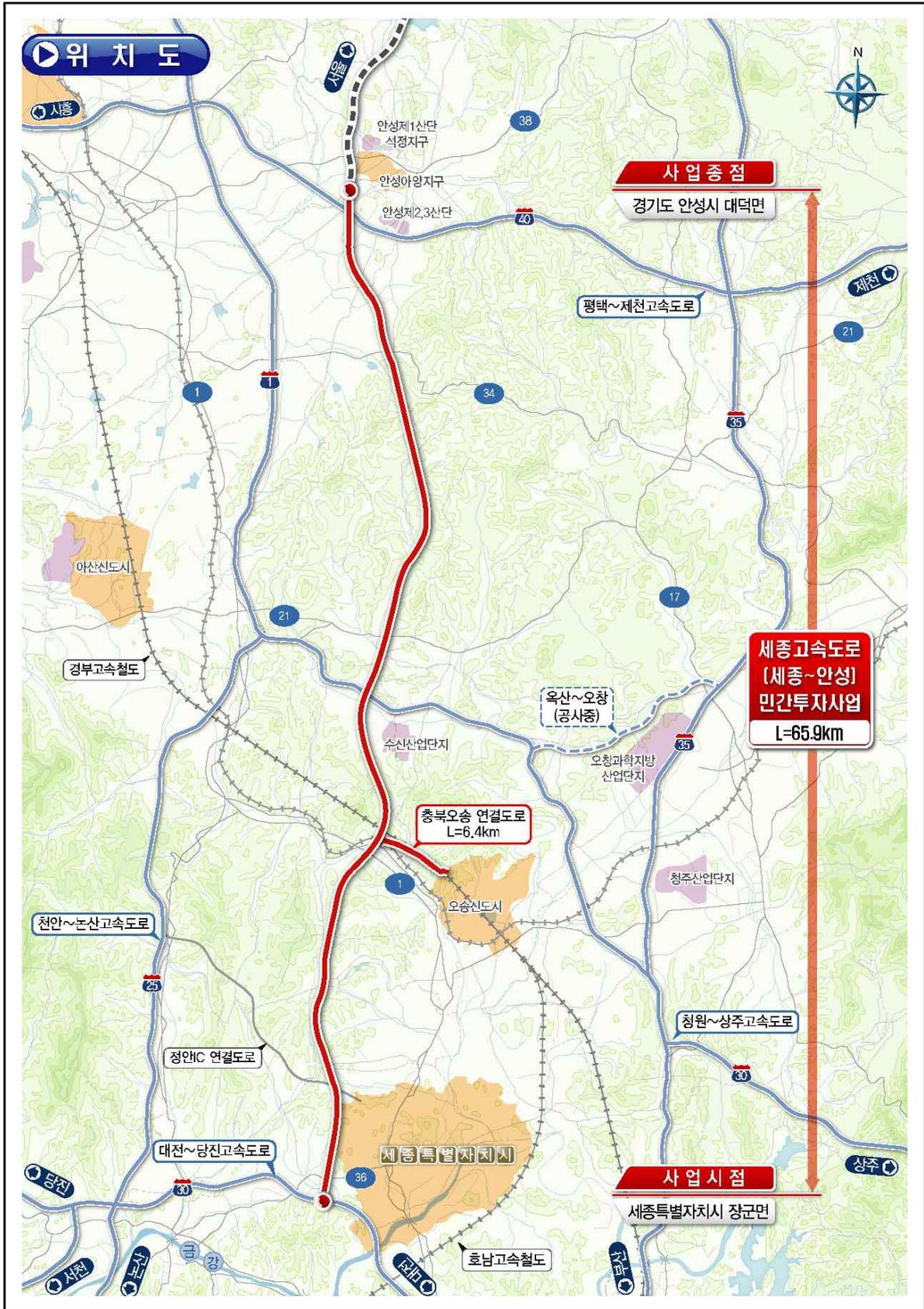
구분	대안1(최초제안)	대안2(기본조사)	비고	
연장	L=65.90km	L=57.96km	-	
시설 개요	교량	60개소/10,755m	58개소/7,760m	JCT, IC 교량 미포함
	터널	20개소/14,825m	13개소/9,350m	-
	유출·입시설	JCT : 4개소, IC : 4개소	JCT : 3개소, IC : 5개소	-
	영업소	본선:1개소, JCT:2개소, IC:4개소, 지선:1개소	IC 4개소	-
	휴게소/쉼터휴게소	3개소	2개소	-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도로의 구분		고속도로(지방지역 소재) 지방지역소재	
설계 속도	본선		120km/h, 충북오송 연결도로 : 100km/h
	연결로	JCT	직결 및 준직결 : 60km/h
		IC	직결 및 준직결 : 50km/h 루프 : 40km/h

[토공부 횡단구성]





[계획노선 위치도]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3 대안별 비교·검토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중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선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계획의 특성 및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중점 평가항목, 일반 평가항목, 제외항목으로 선정하여 제시함.
 -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의 실시로 인해 환경변화 및 환경영향이 커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한 항목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
 -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의 실시로 인해 환경변화 및 환경영향이 있어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한 항목 및 다른 항목의 평가를 위해 현황자료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일반 평가항목으로 선정
 -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의 실시로 인해 환경변화 및 환경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은 항목을 제외 항목으로 선정

[표 2.1 - 1] 평가항목 선정구분 및 선정사유(1/2)

구분	세부검토항목	검토항목 설정			설정 및 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정책 계획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개발기본계획으로서 정책계획 항목 제외 ○국제적 환경사항과 연관성 미미
	국가 환경정책			○	
	국가환경 동향·협약·규범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개발기본계획으로서 정책계획 항목 제외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개발기본계획으로서 정책계획 항목 제외
	공간계획의 적정성			○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	
개발 기본 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하위 행정계획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 및 검토

[표 2.1 - 1] 평가항목 선정구분 및 선정사유(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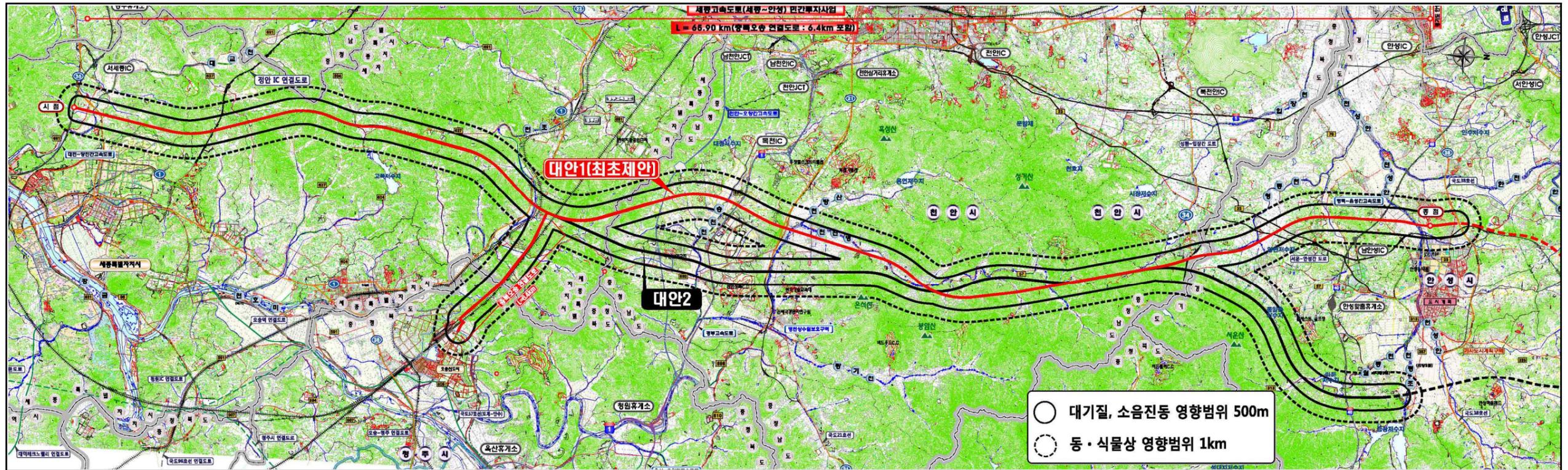
구분	세부검토항목	검토항목 설정			설정사유		
		중점	일반	제외			
개발 기본 계획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노선계획에 따른 식생훼손, 생물의 서식지 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 및 생태축에 미치는 영향 검토 ○노선 입지지역의 흠깨기·쌓기 발생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토공량 등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수환경의 보전	○			○수환경 관련 직·간접적 영향 검토 ○수질, 수리수문 영향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항목별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
		기상		○		○계획의 특성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나 대기질 등 영향예측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노선계획에 따른 운영시 통행차량의 대기오염물질 영향 검토, 계획노선 공사에 따른 대기질 영향검토	
		약취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경미함.	
		온실가스		○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장비, 차량운행에 따른 대안별 온실가스 발생 예상	
		해양환경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없음	
		토양		○		○지장물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요인 검토	
		소음·진동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영향 검토 ○계획노선 공사시 건설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검토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경미함.	
		전파장해			○		
		일조장해		○		○도로운영으로 인한 일조장해, 빛공해 영향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도로건설사업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함.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노선계획시 효율적인 자원·에너지 순환 검토 ○공사시 각종 폐기물 발생 영향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인구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상	
		주거		○			
		산업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경미함.	
		토지이용		○		○편입된 토지의 토지이용변화 검토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수립, 비교노선의 입지로 인해 직·간접적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표 2.2 - 1] 및 [그림 2.2 - 1]과 같이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2 - 1] 대상지역 설정사유 및 범위

구분	세부검토항목	대상지역 설정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개발 기본 계획 의 타 당 성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1km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생활환경의 안정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천안, 대전 기상
			대기질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500m
			온실가스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양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500m
		일조장해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거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그림 2.2 - 1] 대상지역 설정도

2.3 대안별 비교·검토

- 본 계획의 경우 계획비교 측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대안 3)와 행정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대안 1, 2)로 구분하고, 입지측면에서는 행정계획을 수립(Action) 했을 경우 대안1(제안노선)과 대안2(기본조사노선)를 대안으로 설정하였음.

[표 2.3 - 1] 사업계획 대안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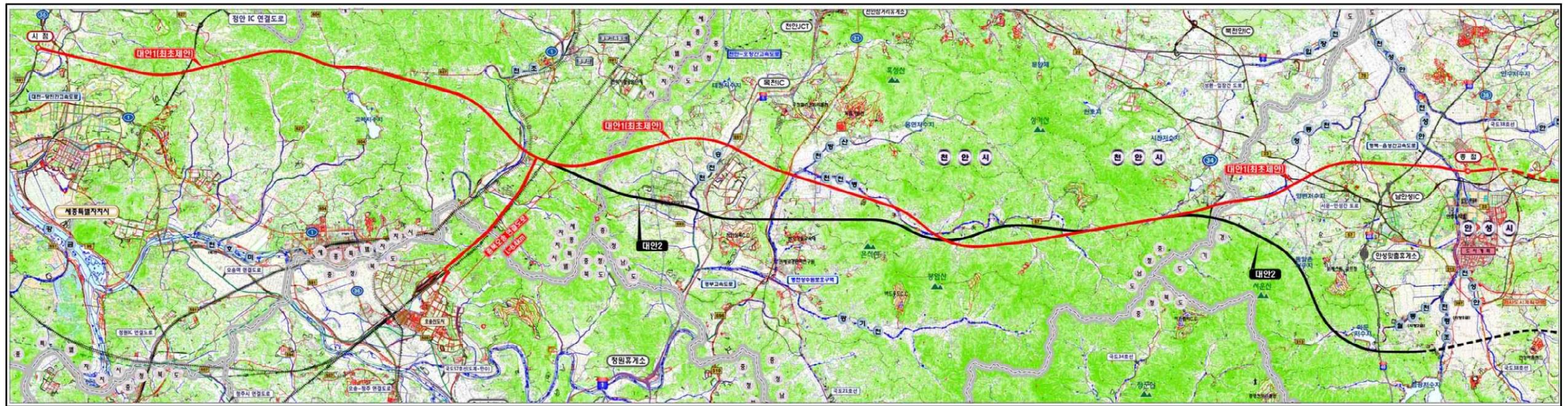
대안종류	대안의 선정
계획비교	○ 대안1 : 본 개발계획을 수립(Action), 제안노선 ○ 대안2 : 본 개발계획을 수립(Action), 기본조사노선 ○ 대안3 : 현 상황을 유지(No Action)
입 지	○ 대안 1 : 본 개발계획을 수립(Action), 제안노선 ○ 대안 2 : 본 개발계획을 수립(Action), 기본조사노선

[표 2.3 - 3] 계획비교 대안 검토결과

구 분	대안1, 2	대안3
개 요	○본 개발계획을 수립(Action)	○현 상황을 유지(No Action)
장 점	○국가간선기능을 확보하고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구간으로 상위계획 및 연계도로 계획에 부합	○계획 미수립시 현 상태의 환경질 및 자연환경 유지 가능
단 점	○공사시 일시적인 환경영향 예상 비산먼지 발생, 인근 하천에 부유토사 유입 등에 따른 하천오염,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등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및 소음 발생량 증가	○주변 택지개발 지구 등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으로 상위계획 및 연계계획에 부합하지 않음
검 토	○계획시행 시 일부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이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부합하며, 국가간선기능을 확보하고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1, 2 선정	

[표 2.3 - 4] 입지 대안 검토결과

구 분	대안1(제안노선)	대안2(기본조사노선)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서측의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연결 • 안성시·천안시 구간은 서측으로 이동하여 선형계획 • 세종, 천안, 안성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서측의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연결 • 안성시·천안시 구간은 동측으로 선형계획 • 세종, 천안, 안성 통과
연장	• L=65.9km(충북오송 연결도로 포함)	• L=57.96km
구조물	교량	• 60개소/10,755m(본선교량)
	터널	• 20개소/14,825m
출입시설	• JCT : 4개소, IC : 4개소	• JCT : 3개소, IC : 5개소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로수 최적화 계획: 4~6차로 계획 • 주변 지장물 저축 최소화 • 오송 신도시 연결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결(고속도로 진·출입이동거리 단축: 9.4km) • 취락지 근접 통과 최소화한 선형계획 • 경부고속철도와의 교차통과 배제 • 장래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연결을 고려한 선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공구 전구간 6차로 계획 • 주변 주요 지장물 저축(산업단지 등) • 오송 신도시 연결 미고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자연환경영향, 생활환경영향, 편입지장물, 구조물 연장 최적화, 주변 연결·접속도로와의 연계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견을 수렴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할 계획임 	



[그림 2.3 - 1] 대안노선도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의견수렴 계획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임.

3.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구분	내용
공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공고 실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 ■ 대상지역 관할 지자체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및 공람 실시내용 게시 - 전자문서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정보통신망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공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40일 - 공람장소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행정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안성시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할 것이며, 선정된 공람장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3.1.2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설명회는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임.
- 한편,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계획 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안성시)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4.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16년 02월 02일(평가협의회 개최)
- 운영위원 : 위원장 포함 11인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이우제	-
위 원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민인홍	승인기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오수미	협의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공희	환경전문가
	광운대 환경공학과(토양·지하수환경)	장운영	환경전문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이두희	해당지자체
	안성시 환경과	김영숙	해당지자체
	천안시 환경위생과	김재구	해당지자체
	청주시 환경정책과	곽경일	해당지자체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선근	주민대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준홍	시민단체 추천

4.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을 수렴하여 결정된 내용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이우제 (국토부 도로투자 지원과)	총괄의견	○본 계획은 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또한, 관련 지자체 및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반영하여야 함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관련 지자체 및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반영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
	3. 대안	○의견 없음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계획노선 주변 또는 관련계획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환경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주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영향 예상지역을 조사하고 환경적 영향을 대안별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함	○계획노선 주변 또는 관련계획에 대한 영향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환경영향 검토를 실시하여 적절한 저감계획을 수립하겠음 ○주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영향 예상지역을 조사하여 환경적 영향을 대안별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음
	6. 기타	○의견 없음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민인홍 (국토부 도로투자 지원과)	총괄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
3. 대안		○의견 없음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계획노선 주변 타 개발계획 등에 영향 예상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노선계획 시 검토하여야 함 ○주변 생활환경 영향 예상지역을 조사하고 고층주거지(아파트 등) 분포 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 타 개발계획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노선계획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겠음. ○주변 정온시설 조사를 실시하여 고층주거지 등에 대한 생활환경 영향여부를 검토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6. 기타		○의견 없음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오수미 (환경부 국토환경 평가과)	총괄의견	○본 심의의견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일원까지 65.9km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검토·반영하여야 함	○심의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검토·반영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 없음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계획노선의 지형 및 경관 훼손, 주변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특히, 자연공원(고북저수지)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지역	○지형 및 경관 훼손, 주변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음 -자연공원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저촉하는 지역은 없으며 주변 지역 통과에 따른 영향을 중점 검토하겠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계획노선 인근 개발계획 등을 파악하여 대기질, 소음·진동 등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노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 검토 ○계획노선이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소음·진동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필요	○주변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대기질, 소음·진동 등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노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을 검토하여 조사하겠음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대상지역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 -소음 등으로 민원이 우려되는 구간은 충분한 설명 및 사전협의를 거쳐 노선 선정 필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민원이 우려되는 구간은 충분한 설명 및 사전협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하겠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
	6. 기타	○의견 없음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사공희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총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의 설정에 있어 전략환경영 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 목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부합하도록 항목을 재설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대안 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계획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예측 결과가 충실하게 수행·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설정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부합되도록 항 목을 설정하여 제시하겠음 ○ 계획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영향 조사 및 영향예측 을 충실히 수행·제시하고 대 안별 비교 검토를 수행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의 종점부(안성시 인근)에 서 제안 노선(대안 1)과 당초안(대 안 2)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 므로 두 대안노선에 대해 환경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계획노선 종점부 안성시구 간의 대안 1, 대안 2에 대 해서는 연결노선과 연계하 여 검토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노선 의 대안 비교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가급적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여 대안 비교검토를 수행 ○ IC, JCT, 휴게소, 영업소의 경우 휘 손이 크게 발생하므로 휘손이 최소 화될 수 있는 입지를 검토하여 선 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하여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여 대 안 비교·검토를 수행하겠음 ○ IC, JCT, 휴게소, 영업소의 경우 휘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입지를 검토하여 선정 하겠음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사공희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4. 평가 항목·범위· 방법 등	○평가 항목의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 과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이 혼재되어 선정되어 있음.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부합되도록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항목 선정 사유가 공사시 영 향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노선 선정에 필요한 사유로 재작 성이 필요함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동식물상) -중 활동이 왕성한 시기(5월~8월)에 현장 조사 실시하고 문헌조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영향예측을 수행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및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이 필요 -생태자연도 2등급의 양호한 산림 식생지역을 통과하므로 훼손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신산경표를 참조하고 있으나, 정맥 수준의 조사만 수행하였으므로 주 요 산줄기(지맥, 분지맥 포함)에 대해서도 통과 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 -사면발생 구간의 연장, 사면규모 (사면고 기준), 토공량 등을 지표 로 대안의 비교검토를 수행	○평가항목 설정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부합되도록 항 목을 설정하겠음 항목 선정 사유는 공사시 및 운영시 작성하여 제시하 겠음 ○중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문헌 조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 여 영향예측을 수행하겠음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및 법 정보호종 등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을 시행하겠음 생태자연도 2등급의 양호한 산림 식생지역의 훼손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을 선 정하겠음 ○주요 산줄기(지맥, 분지맥 포함) 통과 구간에 대한 현 황조사를 수행하겠음 사면 발생 구간의 연장, 사 면 규모(사면고 기준), 토공 량 등을 지표로 대안의 비 교검토를 수행하겠음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사공회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4. 평가 항목·범위· 방법 등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리수문) -계절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를 선정 -하천 수질 및 수리수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 계획노선 주변의 정온 시설 현황 및 노후도를 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표 에 포함하여 대안 비교검토를 수행	○수환경의 계절적 변동을 반 영할 수 있는 조사시기를 선정하겠음 하천 수질 및 수리수문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겠음 ○계획노선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 교·검토를 수행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지역 단절 이 이루어지는 지역, 환경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파악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 이 필요함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공식적인 절 차 이외에 간담회, 인터뷰 조사 등 의 사회조사 방식을 고려하고 수렴 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지역주민에 게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지역 단절 및 환경질 저하가 우 려되는 지역을 파악하여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 령하겠음 -주민설명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간담회, 인터 뷰 조사 등의 사회조사 방 식을 고려하고 수렴된 의견 의 반영여부를 지역주민에 게 공지하겠음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음. 계 획노선은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므로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건 설관리계획 등의 관련 계획들과의 연 관성 및 중복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함	○계획노선의 통과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의 관련계획들 과의 연관성 및 중복성에 대해 검토하겠음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장운영 (광운대 환경공학과)	총괄의견	○본 계획은 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고 중점검토 항목을 선정하여 세부 내용 및 검토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 필요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고, 중점검토 항목을 선정하여 세부 내용 및 검토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보호수 1주가 JCT 지역에 포함되어 영향이 예상되므로 보호방안 검토	○보호수 보호방안을 검토하겠음
3. 대안		○대안노선별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비교 분석 필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하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범위 등은 적정하며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식물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해서는 중점 검토가 필요함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동·식물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해 중점 검토를 실시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계획노선 주변의 자연환경,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의 자연환경,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6. 기타		○의견 없음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이두희 (세종특별 자치시 도로과)	총괄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충분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
3. 대안		○의견 없음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현지 조사시 법적보호종의 서식 현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고복저수지 도립공원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현지 조사시 법적보호종의 서식 현황 및 영향을 조사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고복저수지 도립공원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 법규에 따른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6. 기타		○의견 없음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김영숙 (안성시 환경과)	총괄의견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발생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민원의 사전예방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 발생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민원의 사전예방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세종~안성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이나 전체 사업구간이 세종~서울 구간으로 사업구간별 연결 노선(종점부근 안성구간)까지 검토 필요	○종점부근 안성구간 노선은 연결노선과 연계하여 검토 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절토고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은 사면 안정과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신공법의 터널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는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계획 수립 ○생태자연도 등급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절토고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을 사면 안정과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 설치를 검토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생태자연도 등급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겠음
	3. 대안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하겠음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김영숙 (안성시 환경과)	4. 평가 항목·범위· 방법 등 ○평가항목 영향 예측시 수질오염 측 정망에 안성시 지역에 소재한 안성 천 등을 설정토록 하여 오염원 모니 터링 실시 ○공사 및 도로공사 준공 후 초기우수 (5~10mm)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이 인근 수계에 직 유입되지 않도록 비 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구체적(용량, 위치 등)으로 수립하여야 함.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장비, 운행차 량으로 인한 교통소음저감대책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강구 ○사업시행 및 운영시 개발사업에 따 른 시설물에 의거 농경지 및 인근 주택등 생활밀집지역은 일조장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가 우 려되니 평가항목 중 제외한 일조장 해도 검토항목으로 설정토록 검토	○평가항목 영향 예측시 안성 천 등을 설정하여 수질오염 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음 ○초기우수로 인한 비점오염 물질이 인근 수계에 직 유 입되지 않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 비 산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 겠음 ○농경지 및 인근 주택 등 생 활밀집지역에 일조장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 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 조장해를 검토항목으로 설 정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겠음.
	6. 기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민 간투자사업 진행 및 기본, 실시계획의 노선계획과 관 련하여 안성시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겠음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김재구 (천안시 환경위생과)	총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선형사업으로 주거지, 농경지 관통에 따른 생활권 단절 및 분리로 인한 주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을 조사·분석한 후 그 결과와 더불어 통로 박스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 농경지 관통에 따른 생활권 단절 및 분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와 더불어 통로 박스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하겠음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설정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대기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사업시행으로 대기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사업시행으로 대기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설정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2개소 있어 이동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의 단절이 불가피 한 만큼 야생동물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서식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병천A구역이 수질오염총량단위구역으로 대규모 절·성토공사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발에 따른 대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시행 시 협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의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은 야생동물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서식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음 ○대규모 절·성토 공사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발에 따른 대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시행 시 협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의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은 야생동물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서식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음 ○대규모 절·성토 공사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발에 따른 대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시행 시 협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하겠음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김재구 (천안시 환경위생과)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이 유발 되기에 비산먼지 저감대책(살수시설 강화, 세륜시설 관리 강화, 방진막 설치 등)을 강구하고, 공사장 주변 지역에 대한 방음대책(방음벽 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을 강구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이 유발되므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장 주변 지역에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현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동·식물상 현지조사는 동·식물의 활발한 활동·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함 ○주변지역 도로, 정온시설 등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분석을 제시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도, 지형도, 경사도, 녹지자연도 등을 중첩하여 제시하여야 함 -도면의 경계선, 수계명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로 작성 ○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으로 인한 대기, 소음·진동, 경관 등의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지구 주변의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주변지역 수계현황 및 영향여부, 저감대책을 제시하겠음 ○동·식물의 활발한 활동·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겠음.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영향분석을 제시하겠음 ○토지이용계획도, 지형도, 경사도, 식생보전등급(녹지자연도) 등을 중첩하여 경계선, 수계명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로 작성하여 제시하겠음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 소음·진동, 경관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겠음. ○주변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 실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요약서를 작성·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겠음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겠음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음
	6. 기타	○의견 없음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광경일 (청주시 환경정책과)	총괄의견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도로를 건설 시 주민들에게 환경적 악영향 및 주변 생태환경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대한 저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적 악영향 및 주변 생태환경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대한 저감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변지역의 지역 특성을 파악 한 후 현재의 주변 자연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적으로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장조사시 주변지역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주변 자연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토록하여 생태적으로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3. 대안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 후 그 결과에 따라 선정 환경피해를 저감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 후 그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환경피해를 저감하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공사 시 토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생태통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게 하여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대한 저감한다	○토공사 등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통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게 하여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저감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설명회에서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방지 마련 및 도로 건설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주민설명회 시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방지 마련 및 도로 건설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6. 기타		○없음.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박선근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총괄의견	○대안1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대안 2보다 안성지역은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대안 1, 대안 2에 대하여 환경영향, 주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겠습니다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안1이 대안2보다 시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함	○대안 1, 대안 2에 대하여 환경영향, 주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겠습니다
2. 토지이용 구상안		○안성지역 발전을 위한 IC 2개 개설 필요	○안성지역에 IC 개설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3. 대안		○고삼저수지 근접지역에 IC설치제한 / 소외지역 발전 및 저수지 관광 개발	○고삼저수지 근접지역에 IC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민가지역 노선통과에 대한 소음·진동 고려하여 시공요함	○민가지역에 노선통과 시 소음·진동 검토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안성시민은 세종고속도로 안성통과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함	-
6. 기타		○자연환경보전과 안성시민의 고속도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1이 적합함 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성시와 협의 필요	○대안 1, 대안 2에 대하여 환경영향, 주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성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박준홍 (세종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총괄의견	○지역여건을 고려한 충실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지역여건을 고려한 충실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계획을 수립 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
3. 대안		○의견 없음.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고북저수지 도립공원 및 주변 산림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충실히하여 계획도로로 인한 주변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도로로 인해 주변 주거지 등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때 및 운영시에 먼지, 소음 등에 대한 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이 충실히 수립되어야 함	○고북저수지 도립공원 및 주변 산림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생태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주변 주거지 등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먼지, 소음 등에 대한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계획시 검토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계획시 검토하겠음
6. 기타		○의견 없음.	-